

● 보험가입대상

수출입 운송화물 (국내연안, 보세구역~외항간, 삼국간 운송화물 포함), 상품 및 동산일체

● 보험가입조건

1) 기본조건 - 1. 협회구약관 (Institute Cargo Clause)

- ① 단독해손 부담보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② 분손 담보 (W.A.: With Average)
- ③ 전위험 담보 (A/R: All Risks)

2. 협회신약관

- ① ICC(A) : Institute Cargo Clause(A)
- ② ICC(B) : Institute Cargo Clause(B)
- ③ ICC(C) : Institute Cargo Clause(C)

3. T.L.O.(Cargo), T.L.O.(Air Cargo) : Total Loss Only

전부손해 조건으로 여기에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이 있다

2) 부가위험 담보조건 - 1.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APND:도난, 발하, 불착손)

2.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RFWD: 우담수침손)

3. Breakage(파손)

4. Sweat and Heating Damage (습기와 열에 의한 손해)

5. Leakage/Shortage (누손 및 부족손)

6. 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JWOB: 투하 및 갑판유실)

7. Denting and/or Bending(곡손)

8. Spontaneous Combustion(자연발화)

9. Mold and Mildew(곰팡이손)

10. Rust, Oxidation, Discoloration (R.O.D.:녹,산화, 변색)

11. Hook and Hole (갈고리손)

12. Contamination(오염손)

3) 확장담보- 1. WAR/SRCC(전쟁/동맹파업폭동소요)

2. SRCC(동맹파업폭동소요)

3. I.T.E. (내륙운송확장담보)

4. I.S.E.(내륙저장 확장담보)

5. 특수화물에 대한 특별약관

적하보험(2)

● 보상하는 손해

1) 협회구약관

1. 보험목적물의 전부손해

(현실 전부손해 및 추정 전부손해), 공동해손 희생손해 또는 비용손해

2. 본선·부선이 침몰, 좌초, 화재를 당했을 경우의 단독해손(인과관계 유무를 불문)

3. 하역작업중의 매포장 단위당의 전부손해

4. 본선·부선의 충돌에 직접 기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

5. 손해방지비용

6. 상기 손해이외에 풍랑으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해손

- WA 3% : 단독해손이 전체의 3%를 초과하여야만 손해액 전부를 보상

"Average payable if amounting to 3% on the whole"

- WAIOP : 면책한도의 적용이 없는 단독해손 전액을 보상

"Average payable irrespective of percentage"

7. 면책위험 이외의 모든 외부적 우발원인에 의한 손해를 면책한도의 적용이 없이 보상

- Total Loss Clauses(Cargo) : 1)만 해당

- FPA : 1~6 해당

- WA : 1~7 해당

- A/R : 1~8 해당

2) 협회신약관

ICC(A)	ICC(B)	ICC(C)	ICC(A/R)
전위험	·화재,폭발 ·좌초, 침몰, 전복, 운송 수단의 탈선, 전복 충돌 및 접촉 ·피난항에서의 하역 ·공동해손, 구조비 ·쌍방과실 충돌위험 ·바다, 호수, 강물침수 ·갑판상에서의 포장당 전손, 낙하 ·지진, 화산폭발, 낙뢰 ·갑판유실	·화재,폭발 ·좌초, 침몰, 전복, 운송 수단의 탈선, 전복 충돌 및 접촉 ·피난항에서의 하역 ·공동해손, 구조비 ·쌍방과실 충돌위험	전위험